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86회 임시회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3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

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2022. 3. 18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2. 3. 4.
- 회부일자: 2022. 3. 4.
- 검토기간: 2022. 3. 7. ~ 3. 11.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의장, 부의장실, 부속실 환경개선 및 책장, 냉난방기 대체 구입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신설
- 의정 영상뉴스 제작 및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구축
- 직원 정액급식비 및 파견자 직급보조비 추가 편성

4. 주요내역 [의회사무국 소관]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[%]
의회사무국	4,145,167	4,030,552	114,615	2.84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632,853	1,583,361	49,492	3.13
합리적인 인사행정	9,072	9,072	0	0
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	342,494	342,494	0	0
인력운영비 (의회사무국)	2,060,840	1,996,520	64,320	3.22
기본경비 (의회사무국)	99,908	99,105	803	0.81

예산 편성 현황

- 의장, 부의장실 및 부속실 환경개선 비용 4,270천원
- 의장실 책장 대체 구입비 4,175천원
- 의장, 부의장실 및 부속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12,624천원
- 열린의원실 책장 구입비 1,623천원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,000천원
- 의정 영상뉴스 제작 비용 33,120천원
-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구축 비용 8,000천원
- 의회사무국 직원(24명) 정액급식비 40,320천원
- 파견 공무원(16명) 직급보조비 24,000천원
- 의정팀 증원(1명)에 따른 사무용 OA가구 구입비 803천원

5. 검토의견

-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1억 4,5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.84% 증가한 1억 1,461만원을 증액 편성함.
-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의장, 부의장실 및 부속실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비, 책장 및 냉난방비 대체 구입비 편성,
 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신설,
 - 유튜브용 의정 영상뉴스 제작 및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구축 비용 신규 편성,
 - 의회사무국 직원(24명) 정액급식비 및 파견 공무원(16명) 직급 보조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음.
-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알권리 보장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,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및 각종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 련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